

## 주요 노동동향

### ● 생산 및 물가 동향

#### ◆ 2020년 2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4.9% 증가(전월대비 3.5% 감소)

-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4.9% 증가함.  
- 전월대비로는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줄어 3.5% 감소함.
-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전자부품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기계장비 등이 늘어 전년동월 대비 12.0% 증가함(전월대비 4.1%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함(전월대비 3.5% 감소).

#### ◆ 2020년 2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2.3% 감소, 설비투자는 15.6%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9%), 가전제품 등 내구재(0.9%)는 늘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19.1%) 판매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2.3% 감소함(전월대비 6.0% 감소).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11.9%) 및 항공기 등 운송장비(26.9%) 투자가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15.6% 증가함(전월대비 4.8%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전년동월대비 5.6% 증가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전년동월대비 28.5% 증가하였음.

◆ 2020년 2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4% 하락,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7p 하락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보합임.

◆ 2020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0% 상승(생활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8% 상승)

- 2020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54(2015년=100)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1.0% 상승함(전월대비 0.2% 하락).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2.6%), 교통(2.7%), 주택·수도·전기·연료(1.1%), 음식·숙박(1.1%), 보건(1.6%), 기타 상품·서비스(1.9%), 의류·신발(0.6%), 주류·담배(1.1%)는 상승, 가정용품·가사서비스(-0.3%), 통신(-1.2%), 교육(-0.9%), 오락·문화(-1.3%)는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2.4%)과 식품 이외(1.4%)가 모두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1.8% 상승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 안은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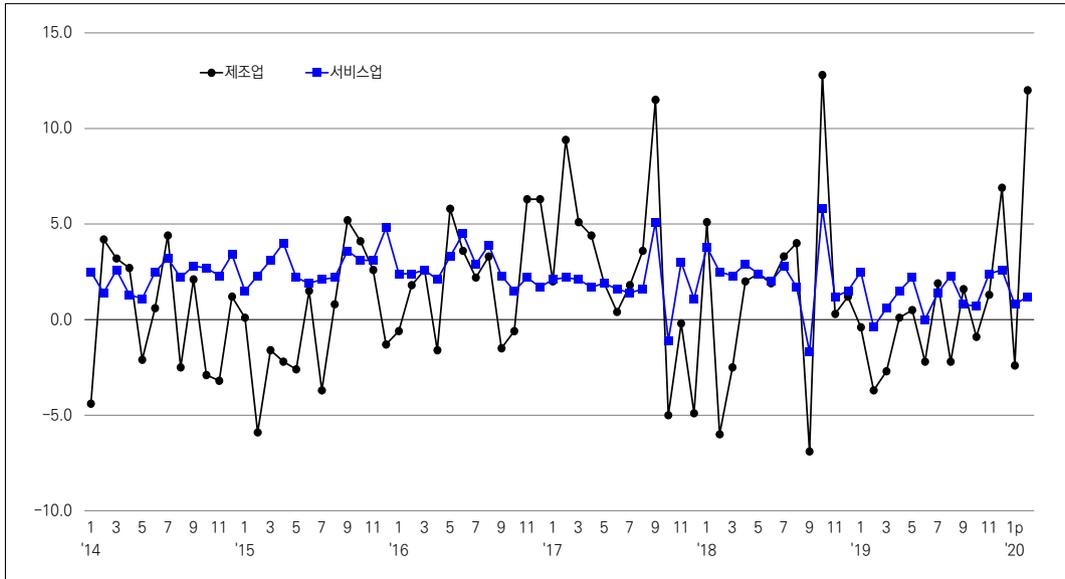
	연간	분기												월		
		2017	2018	2019	2018				2019				2019	2020		
					1/4	2/4	3/4	4/4	1/4	2/4	3/4	4/4	2월	1월p	2월p	
생산	전산업	2.6	1.6	0.6	1.5	2.1	0.1	2.8	-0.9	0.4	0.7	1.9	-2.2	-0.6( 0.0)	4.9(-3.5)	
	광공업	2.5	1.5	-0.1	-0.8	2.3	0.2	4.4	-2.4	-0.3	0.3	2.2	-4.1	-2.6(-1.3)	11.4(-3.8)	
	제조업	2.3	1.3	0.1	-1.2	2.1	-0.1	4.6	-2.2	-0.6	0.5	2.4	-3.7	-2.4(-1.3)	12.0(-4.1)	
	건설업	11.4	-4.2	-6.9	2.3	-2.4	-8.6	-7.0	-10.2	-6.8	-8.2	-2.9	-12.6	-6.1( 1.9)	5.6(-3.4)	
	서비스업	1.9	2.3	1.4	2.9	2.4	1.0	2.8	0.9	1.3	1.5	1.9	-0.4	0.8( 0.5)	1.2(-3.5)	
소비	소비재 판매	1.9	4.3	2.4	5.4	5.0	3.9	3.0	1.6	2.0	2.2	3.4	-1.9	1.8(-3.1)	-2.3(-6.0)	
투자	설비투자	14.4	-3.6	-6.2	11.1	-4.9	-12.3	-6.8	-18.7	-6.7	-1.9	3.7	-25.3	-4.2(-6.9)	15.6(-4.8)	
물가		1.9	1.5	0.4	1.1	1.5	1.6	1.8	0.5	0.7	0.0	0.3	0.4	1.1( 0.0)	1.0(-0.2)	

주: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3) 2019년 이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19년 3월, 2020년 2월, 2020년 3월 기준임.  
 5) p는 잠정치임.  
 6) ( ) 안은 전월비 기준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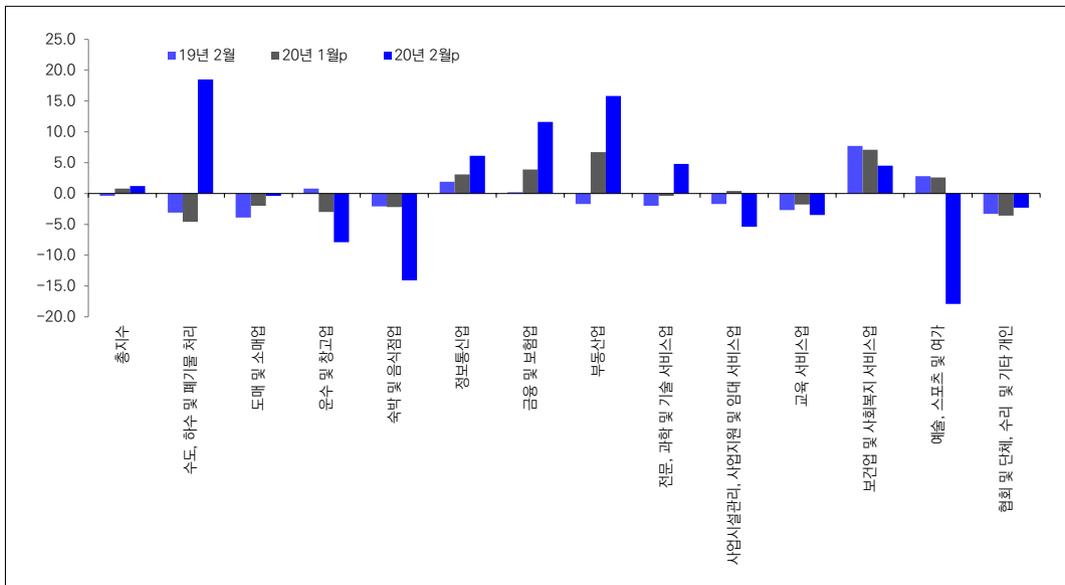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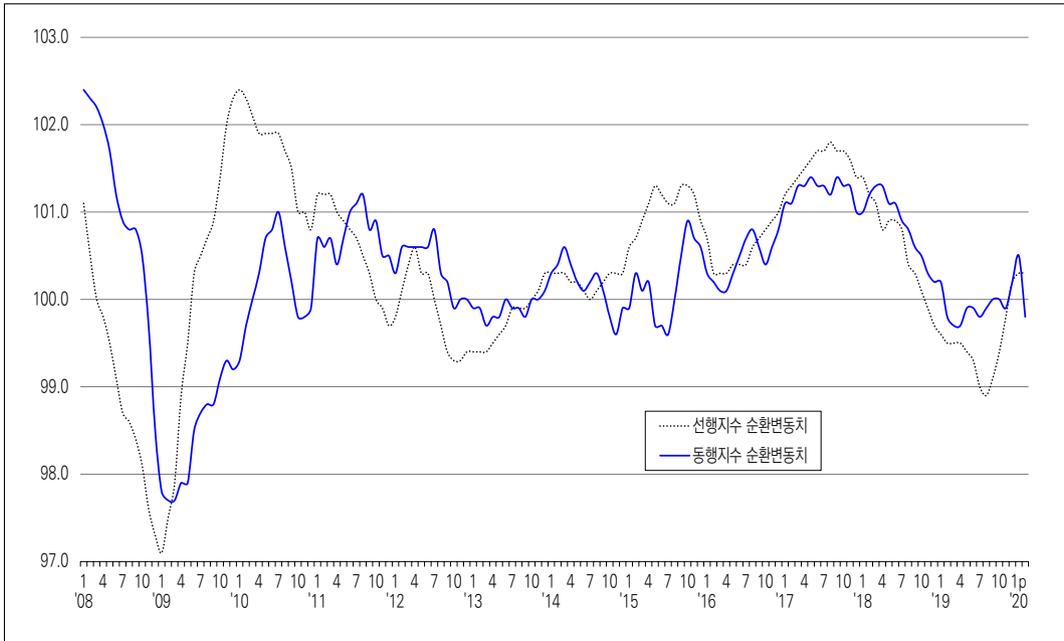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5=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이기쁨, 동향분석실 연구원)

## ● 고용 동향

### ◆ 3월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195천 명 감소, 고용률 0.9%p 하락

- 2020년 3월 경제활동인구(27,789천 명)는 전년동월대비 213천 명(-0.8%) 감소함.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95천 명 감소한 26,609천 명으로, 성별로 보면 여성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15천 명 감소하고, 남성 취업자는 81천 명 감소함.
  -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7천 명 감소한 1,180천 명으로, 실업률은 4.2%를 기록함. 남성 실업자(662천 명)는 전년동월대비 48천 명 감소, 여성 실업자(517천 명)는 31천 명 증가하여 실업률은 남성이 4.2%(0.2%p 하락), 여성은 4.4%(0.3%p 상승)임.
- 2020년 3월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한 62.2%임.
  -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1%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하고, 남성 참가율은 72.5%로 전년동월대비 1.1%p 하락함.
- 2020년 3월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한 59.5%임.
  -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한 69.5%, 여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한 49.9%를 기록함.
  - 15~64세 고용률은 65.4%(0.8%p 하락)로 15세 이상 고용률에 비해 5.9%p 높게 나타남(그림 1 오른쪽 참조).
  - 15~64세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과 비교해 0.8%p 하락한 74.5%이고, 여성은 1.0%p 하락한 56.0%임.
- 2020년 3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516천 명 증가한 16,923천 명임.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재학’과 ‘수강’은 전년동월대비 35천 명 증가하였고, ‘육아’와 ‘가사’는 98천 명 증가함. ‘취업준비’ 상태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8천 명 증가하고, ‘쉬었음’은 366천 명 증가함(그림 2 오른쪽 참조).

〈표 1〉 주요 고용지표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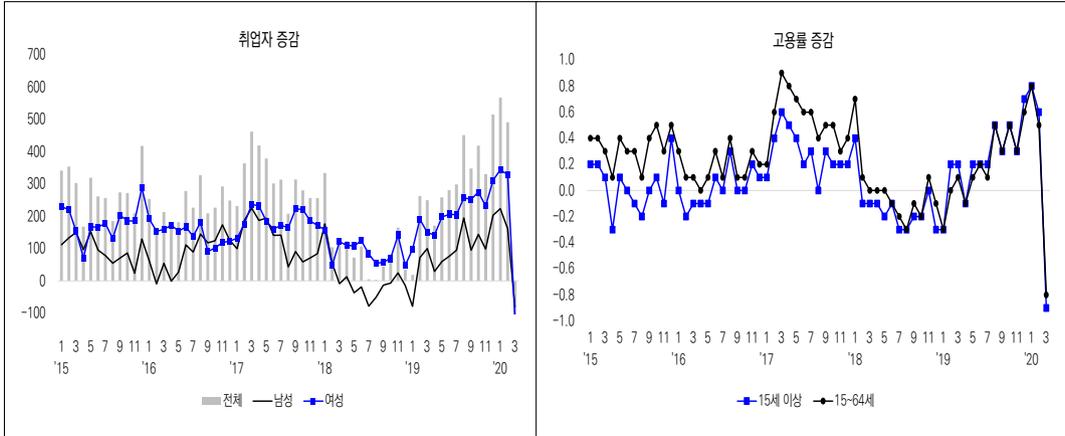
		2017	2018	2019	2018	2019	2020		
					3월	3월	1월	2월	3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43,931	44,182	44,504	44,100	44,409	44,665	44,698	44,712
	(증가수)	(325)	(252)	(322)	(254)	(309)	(347)	(316)	(303)
	경제활동인구	27,748	27,895	28,186	27,811	28,002	27,952	27,991	27,789
	(증가수)	(329)	(148)	(291)	(232)	(190)	(497)	(342)	(-213)
	취업자	26,725	26,822	27,123	26,555	26,805	26,800	26,838	26,609
	(증가율)	( 1.2)	( 0.4)	( 1.1)	( 0.4)	( 0.9)	( 2.2)	( 1.9)	(-0.7)
	(증가수)	(316)	( 97)	(301)	(112)	(250)	(568)	(492)	(-195)
	(남성)	(127)	( 4)	( 91)	( -9)	(100)	(224)	(162)	(-81)
	(여성)	(189)	( 94)	(210)	(121)	(150)	(344)	(330)	(-115)
	경제활동참가율	63.2	63.1	63.3	63.1	63.1	62.6	62.6	62.2
	(남성)	(74.1)	(73.7)	(73.5)	(73.9)	(73.6)	(72.6)	(72.6)	(72.5)
	(여성)	(52.7)	(52.9)	(53.5)	(52.6)	(52.8)	(52.9)	(52.9)	(52.1)
	고용률	60.8	60.7	60.9	60.2	60.4	60.0	60.0	59.5
	(남성)	(71.2)	(70.8)	(70.7)	(70.5)	(70.4)	(69.7)	(69.7)	(69.5)
	(여성)	(50.8)	(50.9)	(51.6)	(50.3)	(50.7)	(50.6)	(50.7)	(49.9)
실업자	1,023	1,073	1,063	1,257	1,197	1,153	1,153	1,180	
실업률	3.7	3.8	3.8	4.5	4.3	4.1	4.1	4.2	
(남성)	(3.8)	(3.9)	(3.9)	(4.6)	(4.4)	(3.9)	(4.0)	(4.2)	
(여성)	(3.5)	(3.7)	(3.6)	(4.4)	(4.1)	(4.4)	(4.2)	(4.4)	
비경제활동인구	16,183	16,287	16,318	16,289	16,408	16,713	16,708	16,923	
(증가수)	( -5)	(104)	( 31)	( 22)	(119)	(-151)	(-26)	(516)	
15~64세	생산가능인구	36,860	36,796	36,791	36,805	36,807	36,723	36,718	36,695
	(증가수)	( 21)	(-63)	( -5)	(-63)	( 2)	(-43)	(-86)	(-112)
	참가율	69.2	69.3	69.5	69.3	69.3	69.1	69.0	68.3
	(남성)	(79.3)	(79.1)	(78.8)	(79.3)	(78.9)	(78.2)	(78.2)	(77.8)
	(여성)	(59.0)	(59.4)	(60.0)	(59.2)	(59.5)	(59.8)	(59.7)	(58.5)
	고용률	66.6	66.6	66.8	66.1	66.2	66.7	66.3	65.4
	(남성)	(76.3)	(75.9)	(75.7)	(75.6)	(75.3)	(75.4)	(75.1)	(74.5)
(여성)	(56.9)	(57.2)	(57.8)	(56.6)	(57.0)	(57.7)	(57.3)	(56.0)	
취업자	24,559	24,511	24,585	24,345	24,376	24,487	24,339	23,982	
(증가수)	(218)	(-48)	(74)	(-33)	(30)	(241)	(107)	(-393)	

주 :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100

자료 : 통계청(2020. 4), 『2020년 3월 고용동향』.

[그림 1]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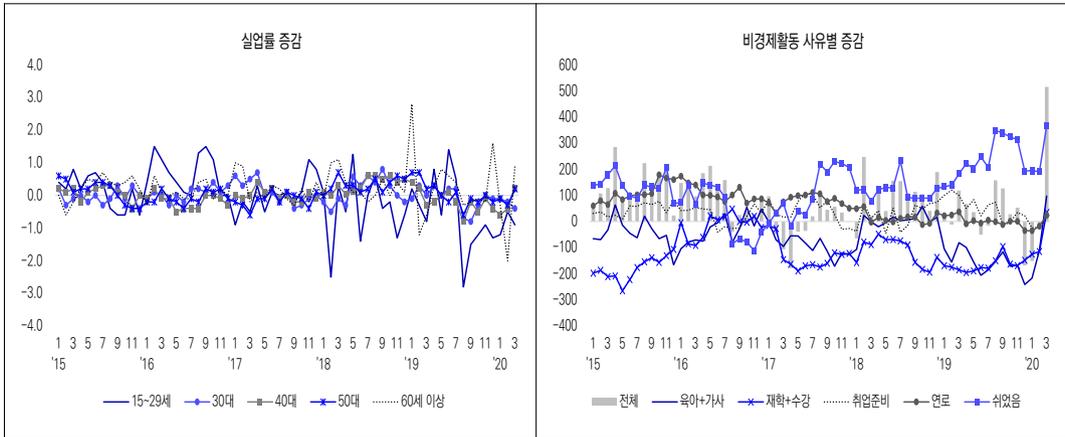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2]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 사유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주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재학+수강은 정규교육기관 재학과 입시학원, 진학준비를 포함하고, 취업준비는 취업준비와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 취업자 감소

○ 2020년 3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감을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336천 명, 7.4%)에서 취업자가 증가하고, 20대(-176천 명, -4.8%), 30대(-108천 명, -2.0%), 40대(-120천 명, -1.8%), 50대(-75천 명, -1.2%) 연령층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20대 연령층 취업자는 감소세가 확대(-176천 명, 2월 -25천 명)되는데, 20대 초반 연령층

에서 취업자 수 감소폭이 크게 확대(-142천 명, 2월 -49천 명)되고, 20대 후반 연령층 취업자가 감소전환(-34천 명, 2월 25천 명)됨.

- 30대 초반 연령층 취업자는 증가폭이 크게 축소(18천 명, 2월 64천 명)되고 30대 후반 연령층 취업자는 감소폭이 확대(-126천 명, 2월 -45천 명)됨. 30대 초반 미혼 여성 취업자는 증가폭이 소폭 확대(45천 명, 2월 37천 명)된 반면 기혼 여성 취업자는 감소폭이 확대(-33천 명, 2월 -4천 명)됨. 30대 후반은 미혼 취업자는 증가세를 유지(20천 명, 2월 21천 명)하고 기혼 여성 취업자가 감소전환(-63천 명, 2월 3천 명)하여 미혼 여성의 고용 증가세 유지와 기혼 여성의 고용 이탈이 관찰됨.

〈표 2〉 연령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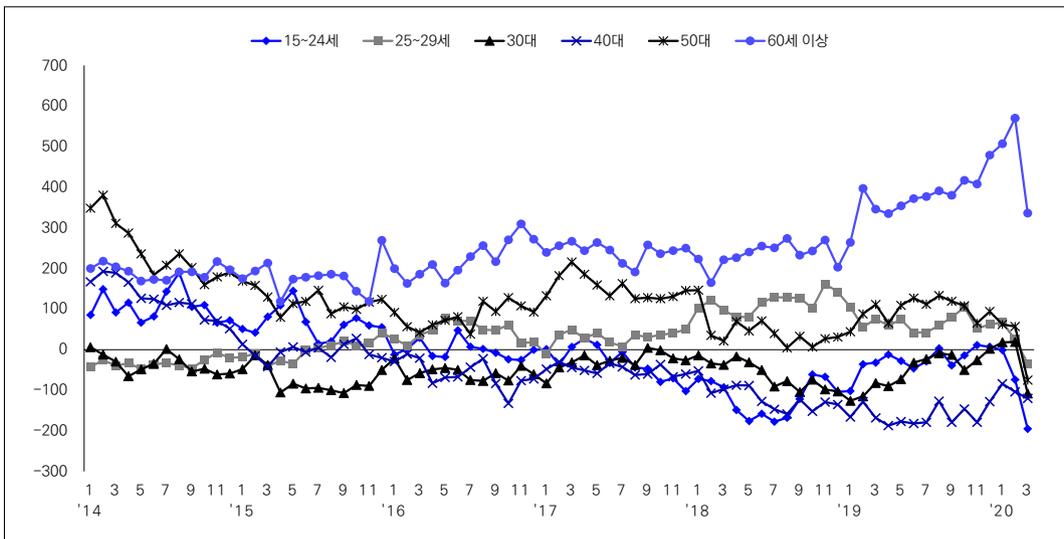
	2017	2018	2019	2018	2019	2020		
				3월	3월	1월	2월	3월
전 체	26,725 (316)	26,822 (97)	27,123 (301)	26,555 (112)	26,805 (250)	26,800 (568)	26,838 (492)	26,609 (-195)
15~19세	247 (3)	205 (-42)	198 (-7)	213 (-26)	204 (-9)	205 (3)	194 (-25)	150 (-53)
20~29세	3,660 (-3)	3,699 (39)	3,747 (48)	3,644 (30)	3,696 (52)	3,751 (63)	3,663 (-25)	3,520 (-176)
20~24세	1,368 (-34)	1,292 (-77)	1,272 (-20)	1,284 (-67)	1,260 (-24)	1,255 (-4)	1,215 (-49)	1,119 (-142)
25~29세	2,292 (30)	2,408 (116)	2,475 (68)	2,360 (97)	2,436 (75)	2,496 (67)	2,447 (25)	2,402 (-34)
30~39세	5,643 (-29)	5,582 (-61)	5,529 (-53)	5,597 (-38)	5,515 (-82)	5,518 (18)	5,501 (19)	5,407 (-108)
30~34세	2,593 (-139)	2,512 (-81)	2,493 (-19)	2,523 (-109)	2,468 (-55)	2,521 (57)	2,529 (64)	2,486 (18)
35~39세	3,050 (110)	3,070 (20)	3,037 (-34)	3,075 (72)	3,047 (-27)	2,997 (-39)	2,972 (-45)	2,921 (-126)
40~49세	6,783 (-50)	6,666 (-117)	6,504 (-162)	6,664 (-97)	6,496 (-168)	6,455 (-84)	6,426 (-104)	6,376 (-120)
50~59세	6,302 (152)	6,346 (44)	6,444 (98)	6,271 (21)	6,382 (111)	6,373 (62)	6,358 (57)	6,308 (-75)
60세 이상	4,090 (242)	4,324 (234)	4,701 (377)	4,165 (221)	4,512 (346)	4,497 (507)	4,696 (570)	4,848 (336)

주 :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료 : 통계청(2020. 4), 『2020년 3월 고용동향』.

- 40대 연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20천 명 감소하여 감소세가 확대(2월 -104천 명)됨. 40대 초반 취업자는 감소폭이 확대(-23천 명, 2월 -3천 명)되었고, 후반(-97천 명, 2월 -101천 명) 연령층은 감소세를 유지함.
- 50대 연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5천 명 감소(50대 초반 -14천 명, 50대 후반 -60천 명)하여 감소전환(2월 57천 명)되고, 60세 이상 연령층은 취업자가 336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2월 570천 명)됨.

[그림 3]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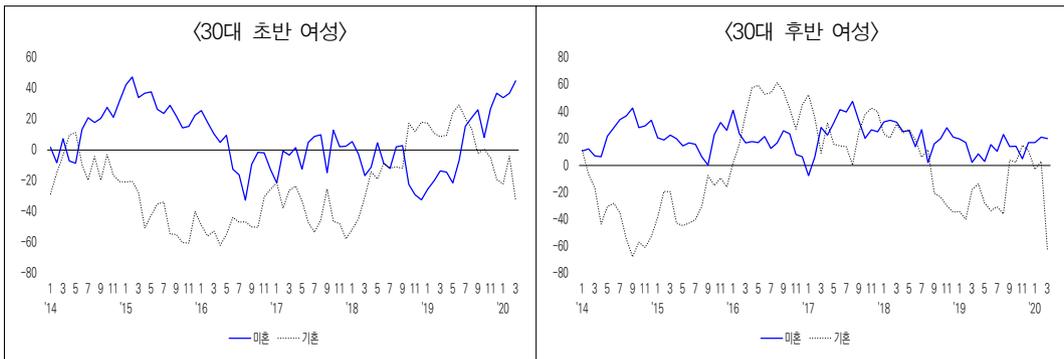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4] 30대 여성 혼인여부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임금근로자 감소전환, 임시직 감소폭 확대

- 2020년 3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20,056천 명)는 전년동월대비 134천 명(-0.7%) 감소하고, 비임금근로자(6,553천 명)는 전년동월대비 62천 명(-0.9%) 감소함.
- 3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증가폭이 감소(전년동월대비 459천 명 증가, 2월 616천 명)하고 일용직은 감소폭이 확대(-173천 명, 2월 -107천 명)됨. 임시직은 420천 명 감소하여 감소세가 크게 확대(2월 -13천 명)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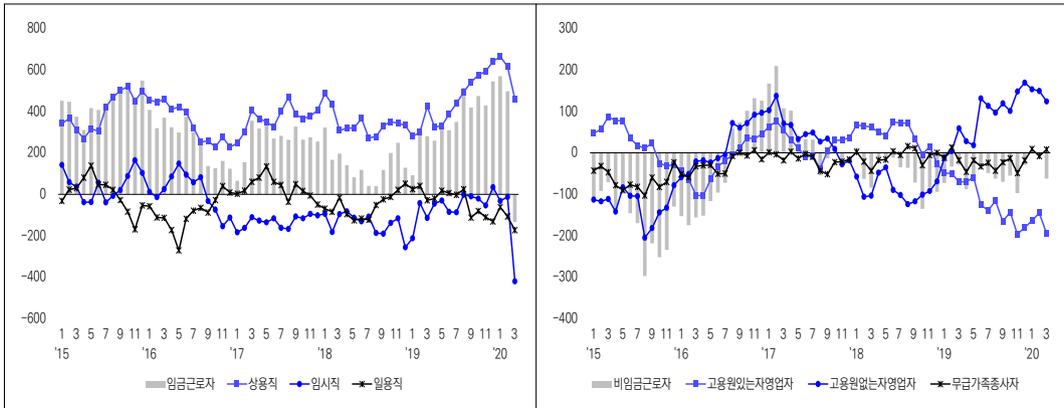
	2017	2018	2019	2018	2019	2020		
				3월	3월	1월	2월	3월
전 체	26,725 (316)	26,822 ( 97)	27,123 (301)	26,555 (112)	26,805 (250)	26,800 (568)	26,838 (492)	26,609 (-195)
비임금근로자	6,791 ( 51)	6,739 (-52)	6,683 (-56)	6,644 (-84)	6,615 (-29)	6,423 ( -2)	6,445 ( -5)	6,553 (-6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608 ( 24)	1,651 ( 43)	1,538 (-114)	1,662 ( 63)	1,592 (-70)	1,450 (-164)	1,459 (-145)	1,398 (-19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74 ( 44)	3,987 (-87)	4,068 ( 81)	3,956 (-103)	4,015 ( 59)	4,011 (153)	4,024 (149)	4,139 (124)
무급가족종사자	1,110 (-17)	1,101 ( -9)	1,077 (-24)	1,026 (-43)	1,008 (-18)	962 ( 9)	962 ( -8)	1,016 ( 8)
임금근로자	19,934 (265)	20,084 (150)	20,440 (357)	19,910 (196)	20,190 (280)	20,376 (570)	20,393 (497)	20,056 (-134)
상용근로자	13,428 (366)	13,772 (345)	14,216 (444)	13,679 (308)	14,102 (423)	14,586 (664)	14,596 (616)	14,561 (459)
임시근로자	4,992 (-132)	4,851 (-141)	4,795 (-56)	4,819 (-96)	4,704 (-114)	4,423 (-32)	4,507 (-13)	4,284 (-420)
일용근로자	1,514 ( 31)	1,460 (-54)	1,429 (-31)	1,413 (-16)	1,384 (-29)	1,367 (-62)	1,290 (-107)	1,211 (-173)
1~17시간	1,362 ( 95)	1,520 (158)	1,821 (301)	1,548 (182)	1,789 (241)	1,781 (264)	1,937 (274)	1,593 (-196)
18~35시간	3,051 (-169)	3,690 (639)	3,581 (-109)	2,738 ( 32)	3,125 (387)	3,344 (306)	3,400 (288)	3,456 (331)
36시간 이상	21,930 (421)	21,209 (-720)	21,314 (105)	21,883 (-149)	21,545 (-338)	21,128 ( 27)	20,883 (-212)	19,953 (-1,592)
주당 평균 근로시간	42.8	41.5	40.7	42.3	41.1	40.4	39.9	38.3

주 :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료 : 통계청(2020. 4), 『2020년 3월 고용동향』.

-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전년동월대비 124천 명 증가(2월 149천 명) 하여 증가세가 소폭 감소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95천 명 감소(2월 -145천 명)하여 감소세가 확대됨. 무급가족종사자는 증가전환(8천 명, 2월 -8천 명)함.

[그림 5]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

- 농림어업, 운수 및 창고업에서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크게 감소함.
  - 2020년 3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농림어업(134천 명), 운수 및 창고업(71천 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함.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2천 명, 2월 202천 명)과 예술·스포츠·여가(9천 명, 2월 56천 명)에서는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됨.
  - 반면, 도매 및 소매업(-168천 명)과 교육서비스업(-100천 명)은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109천 명, 2월 14천 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61천 명, 2월 24천 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27천 명, 2월 36천 명), 제조업(-23천 명, 2월 34천 명)은 감소전환함.
- 단시간 근로자(1~36시간 미만)가 3월 136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크게 축소(2월 562천 명)된 가운데, 1~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감소전환(-231천 명, 2월 230천 명)함.
  - 초단시간 근로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174천 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120천 명), 교육서비스업(-36천 명), 예술·스포츠·여가(-9천 명), 농림어업(-5천 명) 위주로 감소함.

〈표 4〉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2017	2018	2019	2018	2019	2020		
				3월	3월	1월	2월	3월
전 산업	26,725 (316)	26,822 ( 97)	27,123 (301)	26,555 (112)	26,805 (250)	26,800 (568)	26,838 (492)	26,609 (-195)
농림어업	1,279 ( 6)	1,340 ( 62)	1,395 ( 55)	1,186 ( 25)	1,265 ( 79)	1,172 ( 79)	1,194 ( 80)	1,399 (134)
광업	23 ( 4)	19 ( -4)	15 ( -4)	23 ( 2)	15 ( -8)	14 ( -2)	14 ( -1)	16 ( 1)
제조업	4,566 (-18)	4,510 (-56)	4,429 (-81)	4,554 ( 15)	4,446 (-108)	4,447 ( 8)	4,445 ( 34)	4,423 (-23)
전기·가스·증기	72 ( -4)	70 ( -2)	68 ( -2)	74 ( 1)	66 ( -8)	74 ( 10)	77 ( 7)	72 ( 5)
수도·원료재생	115 ( 2)	127 ( 12)	135 ( 8)	122 ( 4)	125 ( 3)	144 ( 10)	143 ( 17)	146 ( 21)
건설업	1,988 (119)	2,034 ( 47)	2,020 (-15)	1,979 ( 44)	1,980 ( 0)	1,974 ( 5)	1,951 (-10)	1,960 (-20)
도매 및 소매업	3,795 ( 41)	3,723 (-72)	3,663 (-60)	3,723 (-96)	3,696 (-27)	3,609 (-94)	3,573 (-106)	3,527 (-168)
운수 및 창고업	1,405 (-22)	1,407 ( 2)	1,431 ( 25)	1,415 ( 4)	1,410 ( -5)	1,509 ( 92)	1,506 ( 99)	1,481 ( 71)
숙박 및 음식점업	2,288 ( -3)	2,243 (-45)	2,303 ( 61)	2,220 (-20)	2,245 ( 24)	2,332 ( 86)	2,275 ( 14)	2,135 (-109)
정보통신업	783 ( -1)	837 ( 55)	861 ( 23)	810 ( 16)	866 ( 55)	849 (-35)	849 (-25)	846 (-19)
금융 및 보험업	794 ( -9)	840 ( 46)	800 (-40)	829 ( 37)	792 (-37)	781 (-32)	787 (-15)	772 (-20)
부동산업	540 ( 57)	528 (-12)	556 ( 28)	503 (-30)	533 ( 30)	553 ( 33)	548 ( 25)	532 ( 0)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092 ( -9)	1,096 ( 4)	1,157 ( 60)	1,075 (-21)	1,158 ( 83)	1,185 ( 49)	1,185 ( 36)	1,132 (-27)
사업시설·사업지원·임대	1,374 (-17)	1,311 (-63)	1,312 ( 1)	1,338 ( 0)	1,295 (-42)	1,328 ( 65)	1,317 ( 35)	1,315 ( 20)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1,058 ( 55)	1,110 ( 52)	1,076 (-33)	1,098 ( 59)	1,105 ( 7)	963 (-10)	1,038 ( 24)	1,045 (-61)
교육서비스업	1,907 ( 45)	1,847 (-60)	1,883 ( 37)	1,836 (-77)	1,870 ( 35)	1,844 ( 7)	1,828 (-10)	1,770 (-100)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921 ( 61)	2,046 (125)	2,206 (160)	2,007 ( 88)	2,179 (172)	2,194 (189)	2,275 (202)	2,260 ( 82)
예술·스포츠·여가	428 ( 22)	445 ( 16)	495 ( 50)	460 ( 44)	465 ( 6)	507 ( 69)	507 ( 56)	474 ( 9)
협회·단체·수리·기타	1,222 ( -3)	1,236 ( 14)	1,233 ( -3)	1,242 ( 40)	1,235 ( -8)	1,215 (-19)	1,223 (-23)	1,202 (-32)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64 ( -5)	48 (-17)	75 ( 27)	55 (-18)	51 ( -4)	93 ( 50)	89 ( 44)	88 ( 37)
국제 및 외국기관	12 ( -5)	7 ( -5)	12 ( 5)	6 ( -4)	11 ( 4)	15 ( 8)	15 ( 8)	15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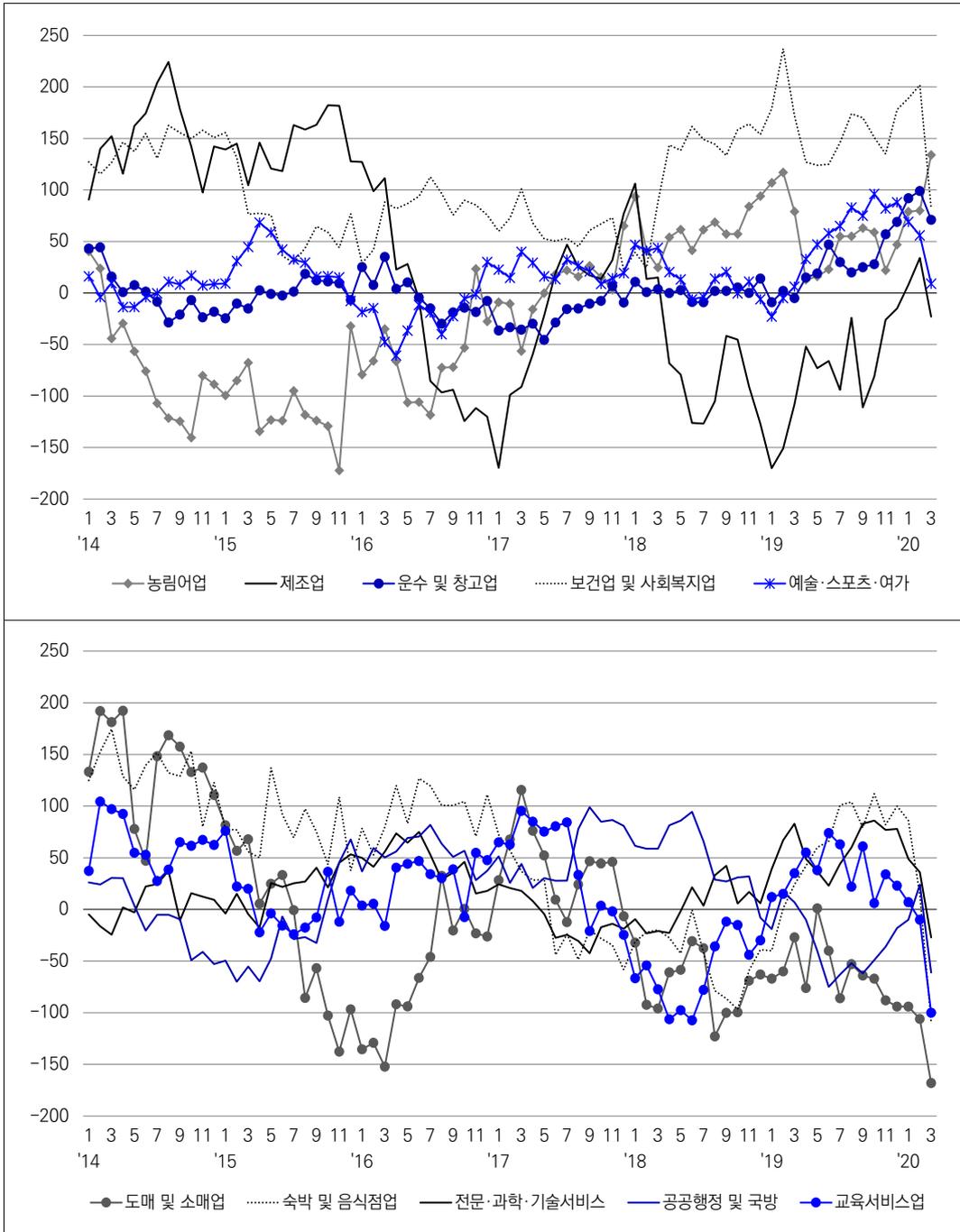
주: 1)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2) 10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자료: 통계청(2020. 4), 『2020년 3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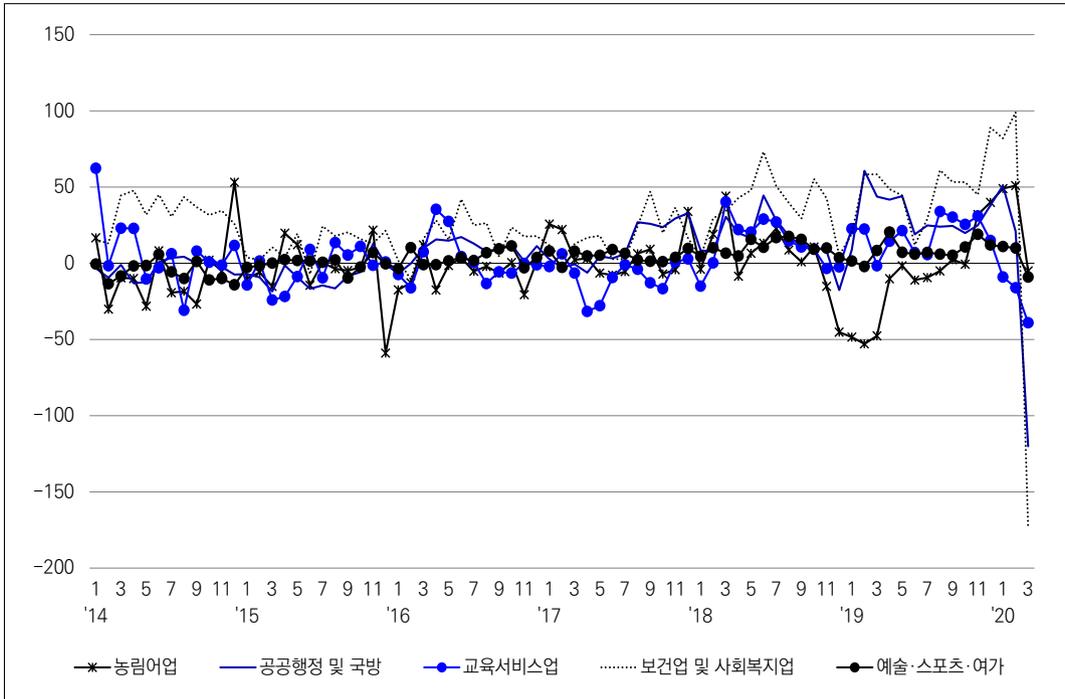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7] 산업별 초단시간 근로자 증감 추이(일시휴직 제외)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연구원)

##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20년 1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8% 증가

- 2020년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092천 원(3.8% ↑)임.
  - － 2020년 1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340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하였으며,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618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4% 상승함.
  -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특별급여 증가폭이 전년동월대비 크게 둔화한 영향으로 임금상승폭이 둔화됨.
  - －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5.4%로 전년동월대비 0.9%p 둔화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표 1〉 임금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201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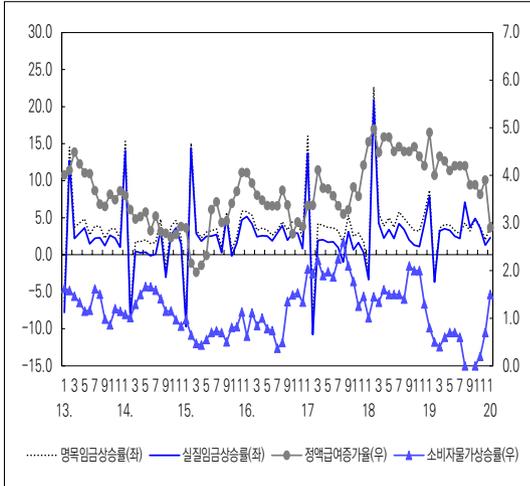
		2016	2017	2018	2019	2019	2020
						1월	1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106 ( 3.8)	3,207 ( 3.3)	3,376 ( 5.3)	3,490 ( 3.4)	3,941 ( 8.7)	4,092 ( 3.8)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331 ( 4.0)	3,418 ( 2.6)	3,592 ( 5.1)	3,702 ( 3.1)	4,185 ( 8.6)	4,340 ( 3.7)
	정액급여	2,668 ( 3.4)	2,764 ( 3.6)	2,891 ( 4.6)	3,010 ( 4.1)	3,050 ( 4.9)	3,139 ( 2.9)
	초과급여	189 ( 4.2)	190 ( 0.6)	197 ( 3.7)	202 ( 2.7)	192 ( 4.1)	196 ( 2.2)
	특별급여	475 ( 7.2)	464 (-2.2)	504 ( 8.5)	490 (-2.8)	944 (23.9)	1,005 ( 6.5)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288 ( 0.6)	1,353 ( 5.1)	1,428 ( 5.5)	1,517 ( 6.2)	1,536 ( 6.3)	1,618 ( 5.4)
소비자물가지수		101.6 ( 1.0)	103.0 ( 1.9)	104.5 ( 1.5)	105.1 ( 0.4)	104.2 ( 0.8)	105.8 ( 1.5)
실질임금증가율		2.8	1.3	3.7	3.0	7.8	2.3

-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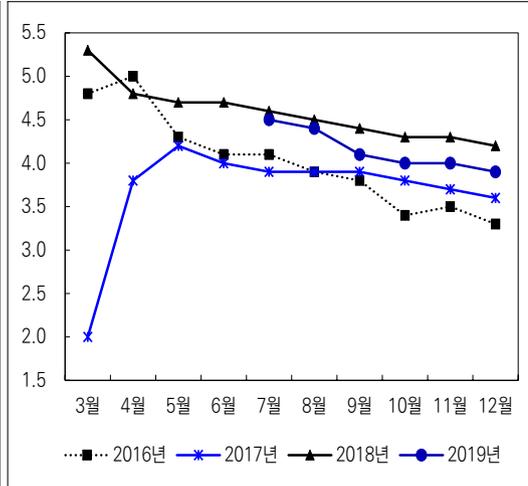
[그림 1]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5=100.0)



[그림 2]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월)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20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상승폭은 2.3%임.

◆ 2019년 12월 협약임금 인상률 3.9%

○ 2019년 12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함.

◆ 2020년 1월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 2020년 1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임금상승률은 각각 5.4%, -0.9%임.

-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3,501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폭이 크게 둔화(6.5%p)되었으며,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7,195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9%p 감소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감소는 반도체 등을 포함한 제조업에서 2019년 1월에 지급되었던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전년대비 축소되었기 때문임.

〈표 2〉 사업체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17	2018	2019	2019	2020
					1월	1월
중소 규모	소 계	2,886 ( 4.6)	3,019( 4.6)	3,139( 4.0)	3,321 (11.9)	3,501 ( 5.4)
	상용임금총액	3,082 ( 4.0)	3,217(11.5)	3,338 ( 3.7)	3,530(12.0)	3,720 ( 5.4)
	정액급여	2,602 ( 4.3)	2,723( 4.7)	2,841 ( 4.3)	2,859 ( 4.9)	2,952 ( 3.3)
	초과급여	164 ( 2.5)	172 ( 4.8)	175 ( 2.0)	167 ( 4.5)	167(-0.3)
	특별급여	316 ( 2.0)	322( 1.9)	322(-0.2)	504(90.2)	601(19.3)
	비상용임금총액	1,350 ( 5.0)	1,422 ( 5.3)	1,505 ( 5.8)	1,521 ( 6.9)	1,589 ( 4.5)
대규모	소 계	4,983 ( 0.5)	5,305( 6.5)	5,356 ( 1.0)	7,263 ( 0.0)	7,195(-0.9)
	상용임금총액	5,145 ( 0.3)	5,474( 6.4)	5,492 ( 0.3)	7,434 ( 0.0)	7,346(-1.2)
	정액급여	3,598 ( 2.3)	3,735( 3.8)	3,843( 2.9)	3,997 ( 4.3)	4,046 ( 1.2)
	초과급여	324(-2.1)	324 ( 0.0)	335 ( 3.5)	314 ( 1.8)	338 ( 7.7)
	특별급여	1,223(-4.5)	1,415(15.7)	1,313(-7.2)	3,123(-5.1)	2,962(-5.2)
	비상용임금총액	1,400 ( 6.9)	1,509 ( 7.8)	1,712(13.4)	1,807(-3.5)	2,162(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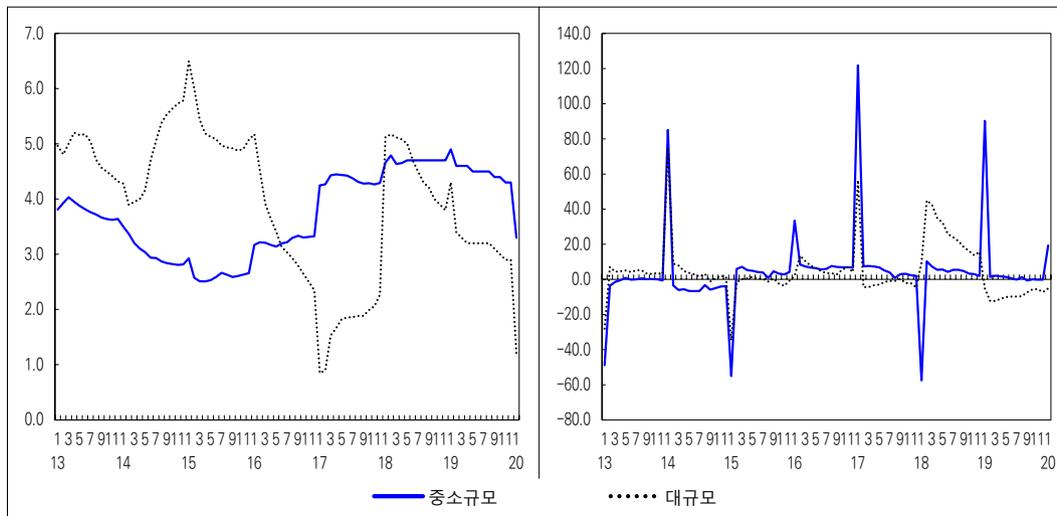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정액급여증가율(좌, 누계)과 특별급여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



주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특별급여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0년 1월 근로자 1인당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이 가장 많음

○ 2020년 1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8,065천 원)이며, 그다음으로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925천 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559천 원)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1월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023천 원)이며,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540천 원),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2,757천 원) 순으로 나타남.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 천 원, %)

	2017	2018	2019	2019	2020
				1월	1월
전 산업	3,207 ( 3.3)	3,376 ( 5.3)	3,490 ( 3.4)	3,941 ( 8.7)	4,092
광업	3,713 ( 1.0)	3,835 ( 3.3)	3,977 ( 3.7)	4,164 ( 5.8)	4,697
제조업	3,690 ( 2.4)	3,930 ( 6.5)	4,017 ( 2.2)	5,144 ( 7.7)	5,098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281 (-0.3)	6,436 ( 2.5)	6,502 ( 1.0)	5,687 ( 9.7)	5,925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3,089 ( 3.7)	3,288 ( 6.5)	3,506 ( 6.6)	3,634 (15.8)	4,131
건설업	2,624 ( 4.7)	2,784 ( 6.1)	2,951 ( 6.0)	3,139 (12.5)	3,325
도매 및 소매업	3,049 ( 5.8)	3,214 ( 5.4)	3,372 ( 4.9)	3,566 (11.1)	3,903
운수 및 창고업	3,156 ( 4.4)	3,357 ( 6.4)	3,476 ( 3.5)	3,529 (11.5)	3,908
숙박 및 음식점업	1,626 ( 3.6)	1,757 ( 8.1)	1,875 ( 6.7)	1,951 (10.9)	2,023
정보통신업	4,122 ( 3.6)	4,277 ( 3.8)	4,463 ( 4.3)	5,067 (20.4)	5,152
금융 및 보험업	5,706 ( 3.8)	6,026 ( 5.6)	6,236 ( 3.5)	7,191 (14.6)	8,065
부동산업	2,446 ( 2.7)	2,600 ( 6.3)	2,755 ( 6.0)	2,871 (16.0)	3,08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492 ( 1.1)	4,757 ( 5.9)	4,901 ( 3.0)	5,138 (-0.7)	5,559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088 ( 1.9)	2,203 ( 5.5)	2,332 ( 5.9)	2,416 (11.1)	2,540
교육서비스업	3,316 ( 2.6)	3,397 ( 2.5)	3,474 ( 2.3)	4,162 (10.7)	4,100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71 ( 3.7)	2,799 ( 4.8)	2,960 ( 5.8)	3,064 (12.0)	3,191
여가관련 서비스업	2,512 ( 6.8)	2,684 ( 6.8)	2,819 ( 5.0)	2,986 (14.6)	3,173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240 ( 3.4)	2,401 ( 7.2)	2,517 ( 4.8)	2,603 ( 7.7)	2,757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는 유의해야 함. 2017~20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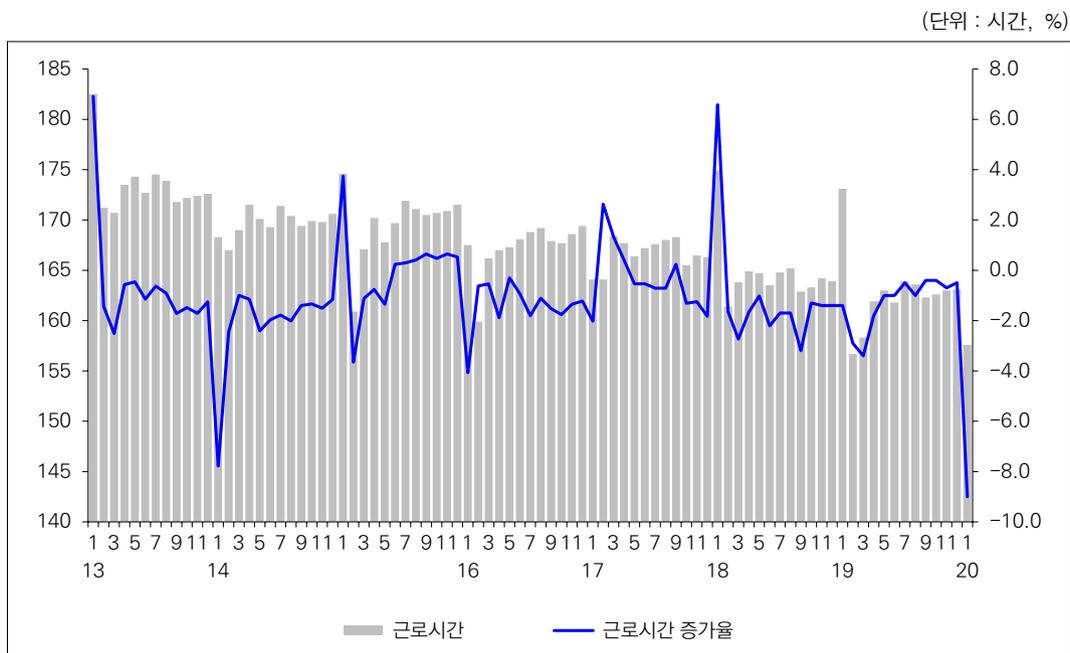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0년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57.6시간으로 전년동월 대비 15.5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는 19.3일로 전년동월대비 1.9일 감소)

- 2020년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근로일수 감소 등으로 157.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5시간 감소함.
  - －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63.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6.6시간 감소, 비상용(임시·일용직)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8.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2시간 감소함.
  - －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4]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증가율(누계평균) 추이



주 :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0년 1월 중소·대규모 사업체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감소

- 2020년 1월 중소기업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은 157.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6시간 감소, 대규모 사업체는 159.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4.8시간 감소함.

- 2019년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은 157.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6시간 감소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는 159.1시간으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14.8시간 감소함.
- 중소기업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 감소폭은 확대된 반면 대규모 상용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9% 증가함.

〈표 4〉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17	2018	2019	2019	2020
					1월	1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6.6( -1.9)	164.1(-1.5)	163.0(-0.7)	172.9(-1.0)	157.3( -9.0)
	상용 총근로시간	174.4( -2.2)	172.1(-1.3)	171.2(-0.5)	181.2(-0.9)	164.3( -9.3)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4.7( -2.1)	163(-1.0)	162.6(-0.2)	172.5(-0.9)	156.7( -9.2)
	상용 초과근로시간	9.7( -4.0)	9.1(-6.2)	8.6(-5.5)	8.6(-2.3)	7.6(-11.6)
	비상용근로시간	105.7( -2.7)	99.2(-6.1)	95.4(-3.8)	102.0(-4.1)	96.6( -5.3)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4.4( -1.5)	163.3(-0.7)	164.1( 0.5)	173.9(-1.0)	159.1( -8.5)
	상용 총근로시간	167.7( -1.8)	166.6(-0.7)	166.3(-0.2)	175.4(-1.1)	160.2( -8.7)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5.4( -1.0)	154.9(-0.3)	154.9( 0.0)	164.3(-1.0)	148.9( -9.4)
	상용 초과근로시간	12.3(-10.2)	11.7(-4.9)	11.4(-2.6)	11.1(-2.6)	11.2( 0.9)
	비상용근로시간	90.3( 5.6)	89.2(-1.2)	104.9(17.6)	125.5( 3.0)	123.9( -1.3)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0년 1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광업(169.7시간), 가장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30.6시간)임

- 2020년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광업(169.7시간)이었으며, 다음으로 부동산업(169.5시간),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169.1시간), 제조업(168.3시간) 순으로 나타남.
- 1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30.6시간)이었으며, 다음으로 건설업(136.6시간),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150.6시간), 숙박 및 음식점업(152.4시간) 등으로 전산업 평균 근로시간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17	2018	2019	2019	2020
				1월	1월
전 산업	166.3(-1.8)	163.9(-1.4)	163.1(-0.5)	173.1(-1.0)	157.6
광업	175.8(-1.2)	176.6( 0.5)	175.7(-0.5)	186.0( 2.2)	169.7
제조업	179.8(-1.8)	177.1(-1.5)	175.9(-0.7)	186.5(-1.1)	168.3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4.9(-1.7)	162.1(-1.7)	160.4(-1.0)	162.2(-1.6)	161.8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7.1( 0.0)	177.8( 0.4)	178.6( 0.4)	187.4( 0.5)	169.1
건설업	141.9(-0.1)	138.5(-2.4)	136.3(-1.6)	146.6(-1.5)	136.6
도매 및 소매업	167.6(-1.5)	165.2(-1.4)	165.5( 0.2)	175.4( 0.0)	160.2
운수 및 창고업	169.2(-2.1)	166.5(-1.6)	164.3(-1.3)	171.7(-2.2)	159.8
숙박 및 음식점업	160.4(-3.2)	159.7(-0.4)	158.6(-0.7)	166.8( 0.3)	152.4
정보통신업	160.9(-1.2)	161.6( 0.4)	163.9( 1.4)	175.9( 1.3)	159.2
금융 및 보험업	160.5(-1.5)	160.9( 0.2)	161.5( 0.4)	173.1(-0.4)	157.8
부동산업	184.9(-2.2)	178.9(-3.2)	176.4(-1.4)	185.7(-2.2)	169.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0.1(-1.7)	160.4( 0.2)	161.4( 0.6)	171.9(-0.2)	156.5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5.1(-3.0)	163.2(-1.2)	162.7(-0.3)	171.2(-0.8)	159.7
교육서비스업	144.4(-2.1)	142.3(-1.5)	142.1(-0.1)	152.8(-2.9)	130.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4.5(-2.2)	162.5(-1.2)	162.2(-0.2)	171.4(-1.1)	155.9
여가관련 서비스업	159.5(-0.4)	157.7(-1.1)	156.1(-1.0)	164.0( 1.0)	150.6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4.2(-2.0)	162.0(-1.3)	159.9(-1.3)	170.5(-0.8)	154.4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는 유의해야 함. 2017~20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0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30건
  - － 3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건수(75건)보다 45건 적은 수치임.
- 2020년 3월 조정성립률 45.8%
  - － 3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50.0%에 비해 4.2%p 낮아진 수치임.

〈표 1〉 2019년, 2020년 3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0. 3	30	31	11	3	8	13	1	12	2	5	17	45.8%
2019. 3	75	56	24	6	18	24	2	22	2	6	47	50.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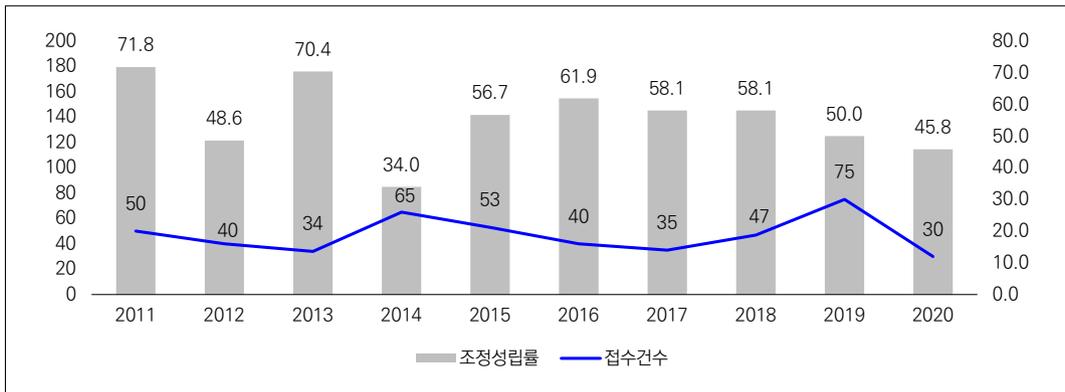
〈표 2〉 2011~2020년 3월 접수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2011. 3	2012. 3	2013. 3	2014. 3	2015. 3	2016. 3	2017. 3	2018. 3	2019. 3	2020. 3
접수건수	50	40	34	65	53	40	35	47	75	30
조정성립률	71.8	48.6	70.4	34.0	56.7	61.9	58.1	58.1	50.0	45.8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그림 1〉 2011~2020년 3월 접수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단위 : 건, %)



◆ 심판사건

- 2020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1,433건
  - － 3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1,287건)보다 146건 높은 수치임.
  -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11.2%(129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88.8%(1,021건)를 차지함.

〈표 3〉 2019년, 2020년 3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0. 3	1,433	1,150	119	10	196	53	489	283	2,525
2019. 3	1,287	1,148	99	11	185	59	464	330	2,239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0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0건
  - － 3월 복수노조사건<sup>1)</sup>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95건)보다 95건 적은 수치임.
  - － 전부 인정비율이 100.0%(1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0%(0건)를 차지함.

〈표 4〉 2019년, 2020년 3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0. 3	0	1	1	0	0	0	0	0	0
2019. 3	95	69	23	1	10	4	31	0	6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관광서비스노련-한국호텔업협회, ‘코로나19’ 극복 위한 노사 공동 협약 체결

- 정기적 소통창구 조성에도 ‘공감’
  - －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과 한국호텔업협회는 3월 26일 간담회를 갖고

1) 복수노조 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 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 협약서’를 체결하였음.

- 이날 관광서비스노련과 한국호텔업협회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및 신속한 지원 ▲관광산업 피해 최소화 위해 정부 세제감면, 저금리 대출, 관광발전기금 등 지원 방안 마련 ▲국내 여행 바우처 사용 대상 및 지원 확대 ▲노동자 고용 보장 노력 ▲무급 휴직, 연차 휴가 강제 금지 등 노동자 생존권 보장 ▲불필요한 쟁의 행위 자제, 협력적 노사관계구축 등에서 공동 노력을 약속하였음.
- 더불어 호텔업계 노사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호텔산업 회복에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하였고, 관광서비스노련과 한국호텔업협회 간 정기적인 소통창구 마련에도 공감하였음.

#### ◆ 경사노위 보건의료위원회,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 합의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의료진 감염·탈진 예방 위한 노사정 합의문 도출

- 4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위원회에서 ‘코로나19확산 위기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 도출된 합의문 주요 내용은 ▲안전한 의료체계를 위한 노동환경 조성 ▲보건의료 인력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의료공급체계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 및 민간의료분야와의 협력 등임.
- 먼저, 보건의료 노사는 코로나19방역과 진료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 인력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장시간 노동에 의한 업무탈진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음.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진료현장에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 또한, 의료기관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인력의 감원을 자제하고 고용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음. 이에 발맞춰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환자 진료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각종 비용과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음. 나아가 전국 의료현장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보건의료 관계자들에 대한 적합한 보상방법을 노사정이 함께 검토하기로 했음.
- 지속가능한 의료공급체계를 위해서는 노사정이 각급 의료기관에서 감염(의심)환자 진료 동선 구분, 수시 방역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감염병 대비 교육 및 훈련 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감염병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음.
-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노사정은 민간·공공부문의 보건자원을 망라하는 혁신적인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음. 이를 위해 정부는 감염병을 포함한 재난

의 발생 초기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공공 인프라를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음.

◆ 서비스연맹, 코로나19 긴급지침 발표

-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3월 23일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서비스연맹 긴급 지침’ 내용을 결정하였음.
- 서비스연맹은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 및 세금감면 ▲특별근로시간 확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규제해제 등 요구안에 대해 비판하였음.
- 서비스연맹은 “정부가 관광업에 이어 ‘모든 피해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재난수당 등 현금 직접지원’, ‘3개월간 해고금지’ 등을 위한 대규모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며 “정부정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투쟁하고 버티겠다”고 말했음.
- 아울러 서비스연맹은 지역별·업종별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본부회의, 업종분과 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조합원 생계안전대책, 구조조정 위기 대책 마련을 위해 임원·실장 회의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코로나19 피해 ‘연차강요→휴업·휴직→해고·권고사직’으로 확산

○ 민주노총,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취합한 코로나19 피해 노동상담 사례 분석

- 민주노총은 4월 1일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상담 사례 발표 및 사각지대 노동자 대책요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음.
- 민주노총은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민주노총 산하 16개 지역본부 상담기관에 접수된 코로나19 피해 관련 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하였음. 노동상담 전화와 구글독스를 통해 들어온 총 상담 건수 673건 중 코로나19 관련 상담은 153건(22.7%)이었음.
- 분석 결과,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33건(21.6%), 제조업 30건(19.6%), 운수 및 창고업 23건(15%), 도매 및 소매업 20건(13.1%), 교육서비스업 11건(7.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건(6.5%) 순으로 피해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코로나19 피해 유형은 무급휴직 59건(19.5%), 휴업수당 문의 50건(16.6%), 해고 및 권고사직 43건(14.2%) 순으로 높았음.
- 피해 유형을 기간별로 나눠 살펴봤더니 2월 한 달은 무급휴직(28.2%), 휴업수당 문의(17.9%), 연차강요(15.4%) 순으로 높았음. 하지만 3월 1~15일 접수된 제보에는 연차강요가 6.9%로 줄어들고 무급휴직(18.1%)과 휴업수당 문의(17.2%), 휴업 통보(14.7%) 순으로 높았음. 이어지는 3월 16~31일 제보에서는 해고 및 권고사직이 20.4%로 크게 증가했음.

며, 무급휴직(18.4%)과 휴업수당 문의(15.6%)가 뒤따랐음.

#### ◆ 이스타항공, 직원 40% 정리해고

○ 희망퇴직, 정리해고 통해 750명 구조조정 계획

- 4월 1일 제주항공에 매각이 결정된 이스타항공이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통해 직원 750명을 구조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스타항공은 4월 3일, 17일 두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24일 구조조정 대상자를 확정·통보할 예정임.
- 이스타항공은 희망퇴직을 진행한 이후 구조조정 목표치에 미달하면 5월 31일 정리해고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짐.
- 앞서 사측은 3월 31일 열린 이스타항공 노사 간 회의에서 현재 1,683명인 직원을 930여명까지 줄인다고 밝혔음. 약 750명을 줄여야 하는 셈임.
-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리스 계약 중인 23대의 기체 중 10대의 조기 반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2대는 반납을 완료한 상태임.
- 한편 이스타항공은 3월 30일 1~2년차 수습 부기장 80여 명에게 다음 달 1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도 이메일로 통보한 바 있음.

#### ◆ 대한항공 직원 1만 9,000여 명, 10월 중순까지 유급 순환휴직

○ 전체 인원 70% 규모…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자구책

- 대한항공은 4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 1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순환휴직을 실시한다고 4월 7일 밝혔음.
- 휴업 대상 직원은 대한항공 전체 인원의 70%를 넘는 규모이며, 부서별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여유 인력이 돌아가면서 모두 휴업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별로 휴직기간은 일률적이지 않다고 회사 측은 밝혔음.
- 대한항공노동조합도 이날 사내 게시판에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공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고통 분담의 일환으로 휴업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앞서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 이달부터 부사장급 이상은 월 급여의 50%, 전무급은 40%, 상무급은 30%를 경영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반납하기로 하였음.
- 현재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 운항 횟수가 약 90%나 급감하였음. 대한항공 보유 여객기 145대 중 100여 대가 운항하지 못하고 있고, 회사 매출은 급감했지만 영업

- 비용과 이자비용 같은 고정비는 월평균 8,800억 원 수준으로 꼬박 내야 함,
- 3월 정부는 항공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유급휴직을 시행하는 항공사에 최대 6개월 동안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하기로 하였음.
  - 이에 대한항공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통상임금 수준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휴직 대상 직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임.

#### ◆ 제주 관광업계 코로나19 불황 수면 위로… 노동자 1만여 명 휴직휴업

- 여행사가 183건·669명으로 건수 기준 전체의 18.4%를 차지
  - 제주도는 올 들어 11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728개 업체, 995건으로 집계됐다고 4월 12일 밝혔음. 이는 1만 539명이 고용유지를 이어갈 수 있는 규모이고, 2019년 신청 건수는 8건, 40명에 불과했음.
  - 고용유지지원금 유형별로는 유급휴직이 796건·7,015명으로 전체의 80.0%에 이르고 있음. 유급휴업이 199건·3,524명으로 나머지 20.0%를 차지하였음.
  - 업종별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인해, 관광산업이 70%를 차지하는 제주의 산업구조 등을 감안할 때 관광사업체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여행사가 183건·669명으로 건수 기준 전체의 18.4%를 차지했고, 이어 도·소매업 141건·612명, 호텔업 116건·2,318명, 음식점업 103건·451명 순이었음. 기타로 분류된 신청 건수도 399건·5,876명, 40.1%에 이를 정도로 업종이 다양했음.
  -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의 영세업체가 70%에 이르는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업체들도 코로나19라는 악재를 피하지 못하고 있음.
  - (주)제주항공은 전체 직원(3,162명)의 57.5%인 1,818명이 유급휴직을 신청했고, 제주신화월드를 운영하는 람정제주개발(주)과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전체 직원(1,444명)의 70.1%인 1,012명이 유급휴업을 신청했음. 특급호텔인 메종글래드 제주호텔도 357명이 유급휴직을 신청했음. 카지노 3개 업체도 6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한편 코로나19 위기경보가 2월 23일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부터 이달 11일까지 제주 방문객은 74만 7,200여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 줄었음.

#### ◆ ‘반복적 비말 노출’ 콜센터 직원 첫 코로나19 감염 산재 인정

- 코로나19 산재 인정 첫 사례…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4월 10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A 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음.

-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A 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되고,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됨.
-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 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 경로를 확인하고 역학 조사 등을 생략해 신속하게 산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 공단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마련한 지침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업무 중 코로나 19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산재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A 씨와 같이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객 응대 등 업무 특성상 감염원에 노출되는 게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가족 등과의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됨.

### ◆ 고용부 “모든 업종에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 ○ 근로자 수 500명 이하 제조업 포함 전 업종 대상

- 3월 25일 고용노동부는 모든 업종에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수준인 최대 90%까지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를 통해 지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금 비율이 기존 75%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하게 90%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는 사업주의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됨.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하의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그 외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하 업종임.
-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됨.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며, 예산 역시 종전 1,004억 원에서 5,004억 원으로 5배가량 증액함.

◆ 무급휴직자·특수고용직에 월 50만 원씩 2개월 지원

○ 노동부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3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지원대책이 논의되었음.
-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업·휴직자 10만 명에게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4월부터 최장 2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8만 명에게도 같은 지원을 함.
-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 중에서도 대리운전이나 전세버스 기사 같은 운송직, 학습지도사와 문화센터 강사를 포함한 교육관련 특수고용직, 예술인이나 공연스태프 같은 여가관련 직군을 집중 지원할 방침임.
- 이런 조치를 마련한 이유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업주가 적지 않기 때문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추경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예산 2천억 원 중 800억 원은 무급휴업·휴직자 지원에, 1천억 원 이상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원에 사용함.
- 무급휴업·휴직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긴급복지지원금도 지급됨.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가 지원 대상이고, 1인 가구는 45만 5천 원, 2인가구는 77만 5천 원, 4인 가구는 123만 원을 지원함. 1개월을 우선 지원한 뒤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월 최대 18만 원 일자리안정자금 한시적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업도 지원 대상 포함

- 4월 5일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영세 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최대 7만 원까지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 일자리안정자금은 ▲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10명 이상 30명 미만으로 사업장 규모를 분류해 차등 지급함. 상용직 노동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일용직 노동자는 1개월

실근로일에 비례해 지원함.

- 노동자 1명당 최대 11만 원을 받던 5명 미만 사업장과 최대 9만 원을 받던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 원, 최대 9만 원을 받던 10명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 원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음. 지원금 인상은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됨.
- 일자리안정자금 인상은 3월 17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이며,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 1,647억 원에서 4,964억 원이 늘었음.

### ◆ 삼성SDI울산노조 설립

○ 한국노총 소속 삼성계열사 노조 여섯 번째 설립

- 4월 8일 삼성SDI 노조는 한국노총에서 설립 총회를 개최하였고, 9일에 울주군청으로부터 노조 설립 필증을 받았음.
- 삼성SDI는 배터리 제조업체로 울산 약 2,000명, 천안 약 4,000명, 기흥·구미 등 전국단위 1만 명 근로자를 보유한 기업임.
- 삼성SDI 노조는 2019년 4월부터 노조 설립 모임을 만들고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음.
- 노조 집행부는 이종기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사무국장, 회계감사 등으로 구성되었음.
- 설립과 함께 노조는 ▲연봉제 폐지 및 호봉제 부활 ▲인사 제도 개선(하위고과 폐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화(임금피크제·특별휴가 폐지 건 등)를 주요 사업으로 내걸었음.
- 현재 삼성SDI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여섯 번째 삼성그룹 계열 노조이고,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웰스토리, 삼성화재, 삼성애니카손해보험 등이 한국노총 산하의 노조를 설립하였음.

### ◆ 순천향의료원 노사, 무기계약직 전원 정규직 전환 합의

○ 무기계약직 600여 명 2023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

- 3월 23일 순천향대 서울·부천·구미·천안병원노조에 따르면 순천향의료원 노사는 무기계약직(임용직) 606명을 2023년 3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음.
- 간호사와 의료기사·일반 사무원·외래진료 보조원 등의 직종이 전환 대상임.
- 전환 인원은 순천향대 서울병원이 178명, 부천병원 219명, 천안병원 157명, 구미병원이

52명임.

- 정규직 전환 시행 일자를 비롯한 세부사항은 병원별 부속합의에 따르기로 했고, 임용직 나급은 일반직(정규직) 8급으로, 임용직 다급은 기능직(정규직) 1급으로 전환해 재임용하기로 하였음.
- 이에 앞서 순천향의료원 노사는 TFT를 구성해 비정규직의 단계적 축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2017년 11월 합의했고, 이 합의에 따라 노사는 일자리 질 개선 노사TFT를 구성해 최근까지 정규직 전환을 논의해 왔음.

### ◆ 현대차 남양연구소 도장업무도 ‘불법파견’

○ 대법원 확정판결... “협력업체 독자적 권한 거의 없어”

- 3월 26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차 남양공장에서 도장업무를 하는 사내 하청업체 서은기업 소속 노동자 박○○씨를 포함한 4명이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하였음.
- 박○○씨 등은 2005~2007년에 입사한 뒤 2년 동안 남양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신차 도장업무를 수행했음. 당시 업무방식을 보면 서은기업 노동자들이 도장작업을 한 뒤 남양연구소 정규직 연구원들이 문제점을 확인·검증했고, 서은기업 노동자들은 연구원들의 지적을 반영해 다시 도장업무를 하는 작업이 반복되었음.
-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 의사를 밝히라고 주문한 2017년 2월 서울고법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음. 이는 남양연구소 직원들이 박○○씨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들어 서은기업 노동자들이 원청 정규직에게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는 것임.
- 재판부는 “협력업체의 작업방법·순서·내용·속도는 현대차가 정한 표준 TO와 현대차가 설치·운영한 컨베이어벨트 라인에 의해 결정됐다”며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판시하였음.

### ◆ 한국지엠노조,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가결

○ 13~14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 53.4%

- 4월 14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 53.4%로 잠정합의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음.
- 한국지엠지부는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잠정합의안은 투표에 참여한 7,233명(투표율 92.6%) 중 3,860명(53.4%)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되었음. 반대는 3,341표, 무효는 32표가 나왔음.

- 한국지엠 노사는 3월 25일 해를 넘긴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하였음. 주요내용은 ▲2019년 임금 동결 ▲2018년 성과에 따른 성과급 및 일시금 미지급 ▲차량 인센티브 바우처 제공 등임.
-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2018년 임금교섭에 이어 2019년 임금교섭에서도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잠정합의 했음.
- 대신,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실시해 조합원들이 회사 판매차량을 구매할 시 1인당 인센티브 바우처 1매를 지급하기로 했음. 인센티브 프로그램 판매차종은 트레일블레이저, 말리부, 스파크이며, 인센티브 바우처를 통해 각각 3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5개 정당 여성 당직자 40% “부서배치 차별 경험”

○ 사무처 직원들 조사… 정보·인맥 소외 각 “23%” “28%” 불만

- 3월 1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9년 7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5개 정당 사무처 당직자 200명(설문조사에는 남성 당직자 110명, 여성 당직자 90명이 참여하였음)을 대상으로 정당의 조직문화 인식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음.
- 조사에 참여한 여성 당직자 5명 중 2명(40%)은 부서배치 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남성 당직자의 경우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4.5%로, 여성 당직자보다 15% 포인트가량 낮았음.
- 여성 당직자들은 당내 인맥을 형성하는 데도 소외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남녀 당직자들 모두 국회의원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정당 내 ‘인적 네트워크(인맥)’를 꼽았음. 인맥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선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여성(28.9%)에서 남성(20.9%)보다 더 높게 나왔음.
- 여성 당직자들은 불만족의 주요 이유로 ‘네트워크에 소속돼 있으나 중요 정보에서는 소외’(23.1%), ‘핵심 네트워크에서 소외’(19.2%) 등을 꼽았음.
- 여성 당직자들은 정당 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음. 여성 당직자들에게 정당 내 성평등 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을 때, ‘여성으로서의 경험과 관점은 남성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영할 것’이라는 응답은 21.6%에 그쳤음. 반면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42.0%로 가장 많았음.

### ◆ 실습생도 일반 노동자처럼 ‘안전조치’ 의무화

#### ○ 산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3월 24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보호구 지급과 추락 방지 등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현장실습생 특례조항을 신설해 ▲산재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 제공 ▲산재발생 시 작업중지 ▲안전보건교육 등 일반 근로자를 상대로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하게 했음.
-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가 받는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 조항도 일반 근로자를 상대로 한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적용하기로 하였음.
- 개정안은 이미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됨.

(조규준, 동향분석실 연구원)